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

1. 의결주문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○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제19816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됨에 따라 아동의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,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보호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제출하고,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함(안 제2조)

- O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탁기관인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임함(안 제3조)
-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출생정보 의 삭제 및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 보함(안 제4조)
- O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이 중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보함(안 제5조)
- 4.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^{붙임과 같음}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1조,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,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출생사실의 통보)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 의 "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"은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말하다.
 -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 지 관할 시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3조(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그 밖에 전산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 규로 정한다.
 - 1.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및 보안
 - 2.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
 - 3.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
- 제4조(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」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 록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·읍·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) 법 제11조제5 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·읍 •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「가족관계의 등록

등에 관한 규칙」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·읍·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일반사항)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,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시·읍·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327